

「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년 10월 01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9년 10월 10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49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19년 10월 10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안전건설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개정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명칭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바뀌었고,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최순철)

- 본 조례안은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기존의 「평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자연재해대책법

제4조(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(이하 "관계행정기관의 장"이라 한다)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·확정(지역·지구·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·인가·승인·면허·결정·지정 등(이하 "허가등"이라 한다)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(이하 "개발계획등"이라 한다)의 확정·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(이하 "재해영향평가등"이라 한다)에 관한 협의(이하 "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"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

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취소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실효되어 해당 개발계획등의 확정·허가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완료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.

1. 해당 개발계획등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것
2. 해당 개발계획등에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
3. 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

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계획등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

를 요청하여야 한다.
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고, 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수행, 재해의 예방·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.
- ⑦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규모 등에 따라 재해의 예방,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등 협의 관련 사항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

- 제5조(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**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·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, 위원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하는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.
 - ③ 제2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 - ④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- 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(이하 "개발계획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.
 1.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
 2.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
 3.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
 4.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
- ⑥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⑦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

제73조(권한의 위임)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자연 재해 상황을 조사하는 경우 사유시설 피해(산사태 피해는 제외한다)와 시설물별 피해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조사권한을 시·도 본부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14. 8. 6., 2017. 1. 26.>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제76조제1항에 따라 법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한다. <신설 2017. 1. 26., 2017. 7. 26., 2018. 10. 23.>

1. 시·도지사 및 시·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: 해당 시·도지사
 2.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시·군·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: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[제2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한(이

하 "해당 권한"이라 한다)과 관련되는 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]을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한다. <신설 2017. 1. 26., 2017. 7. 26., 2018. 10. 23., 2018. 12. 31.>

1. 법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
2. 법제6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의 접수
3. 법제6조의3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통보의 접수
4.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공사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
5. 법 제6조의4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의 접수
6.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

□ 지방자치법

제102조(국가사무의 위임) 시·도와 시·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 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.